

영등포구의회
제203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
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9. 2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68호로 2017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법제처의 「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」 과 자치법규 정비사항 통보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전파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의 위임 없는 취소(침해적) 규정 삭제

- 법률의 위임 없는 전통시장 인정취소(안 제11조)
- 법률의 위임 없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(안 제19조)
- 법률의 위임 없는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(안 제23조)
- 법률의 위임 없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(안 제29조)

나.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(침해적) 규정 삭제

- 법령의 근거 없이 정관 변경방법 및 제출의무를 규정
(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3항)

- 법령의 근거 없이 상인회 변경사실 제출의무를 부과
(안 제22조제3항)
- 법령의 근거 없이 서류제출 및 보고의무를 부과(안 제27조)

다. 기타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 정비

-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(안 제1조)
- ‘중소벤처기업부’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(안 제5조제3항)
- 해석 오인의 여지가 있는 안 제22조제1항의 ‘정부와 시·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’ 문구 삭제
-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여 중복되는 규정 및 별지서식 정비
(안 제36조~안 제42조)

라. 법제처 발간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(안 제2조 각 호, 안 제6조제1항제2호, 안 제12조~안 제15조, 안 제30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,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「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」 과 자치법규 정비사항 통보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전파에

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법률의 위임 없는 침해적 취소 규정인 안 제11조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, 안 제19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, 안 제23조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, 안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,
- 법률의 위임 없는 침해적 의무 규정인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정관 변경방법 및 제출의무, 안 제22조제3항 상인회 변경사실 제출 의무, 안 제27조 서류제출 및 보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,
- 기타 자치법규의 입안기준에 따라, 불일치 사항 정비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 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, 안 제5조제3항에 ‘중소벤처기업부’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였으며, 안 제22조제1항의 ‘정부와 시·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’란 문구 삭제로 해석 상 오인 여지를 없앴으며, 상위법령 중복규정인 안 제36조부터 안 제42조까지와 별지를 삭제하였음.
- 또한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안 제2조 각 호,

안 제6조제1항제2호,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, 안 제30조 제1항을 정비함.
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해석오인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여 국민의 이해도 및 권리 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전통시장"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
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제65조(상인회)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7조(시장관리자)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9조(보고 및 자료의 제출) ② 중소기업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,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

제15조(보고)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·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